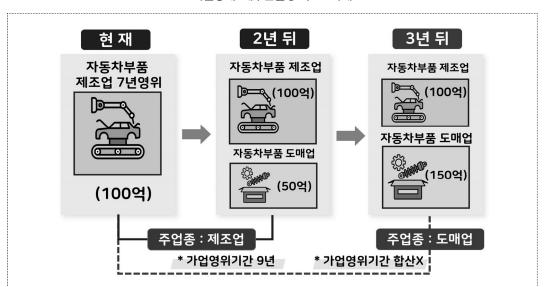


- 국세청, 2024. 5

- □ (제도개요) 국세청(청장 김창기)은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세제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「가업승계 세무컨설팅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 -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법 지식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별 상황에 맞는 요건을 국세청에서 사전에 진단하고, 미비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상시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.
 - 2022년 1기 컨설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39개 업체를 컨설팅하였고, 오는 9월부터 1 년간 운영될 제3기 컨설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.

<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주요 사례 >



2이상의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이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판단하므로, 업종별 매출액이 역전되는 경우 주업종 또한 변경되는 것으로 봄

→ 주업종을 10년 이상 계속 유지해야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므로, 향후 매출구조를 고려해 업종 추가보다는 별도 법인 설립을 컨설팅

- □ (신청 방법) ①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하였거나, ②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은 '24.7.1.부터 '24.7.31.까지 방문, 우편,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, 선정 결과는 '24.9.2.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.
 - * 제외업종 : 농·임·축산·어업, 법무·회계서비스업, 이·미용업, 목욕업, 세탁업, 예식장 등
 - 한편, 올해부터는 이전에 신청하였으나 선정이 안 된 기업은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심사 대상에 포함하여 한 번 더 컨설팅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.
- □ (선정 우대)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,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출 및 장수 중소기업을 우대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.

< '23년 「가업승계 세무컨설팅」 대상자 선정 현황 >

구분	심사대상	최종선정				
		합 계	1순위 (수출기업)	2순위(장수기업)		2소의 이번
				40년 이상	30년 이상	3순위 이하
건수(건) (점유비,%)	407	189	80 (42.3)	28 (14.8)	54 (28.6)	27 (14.3)

- * 최종 선정된 189개 기업 중 수출·장수기업이 162개로 85.7% 차지
- 먼저, '22년 또는 '23년 수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% 이상이거나, 수출 중소기업 중 관세 청·코트라가 선정한 세정지원대상 업체를 최우선 선정하고,
-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받은 명문장수기업*과 사업영위기간이 30년 이상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오랫동안 기여한 장수기업 등을 기준에 따라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.
 - * 해당 업종에서 45년 이상 건실하게 운영한 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, 수출 증대와 같은 경제 적 기여 등을 평가하여 선정된 기업(현재 43개)

│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우선 선정기준 │

- ∘ (1순위)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인 수출 중소기업
- ·(2순위)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명문장수기업 및 사업기간 30년 이상 장수기업
- (3순위)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이 큰 기업
- ◦(4순위) 조사모범 및 납세자의 날 수상한 모범납세기업(최근 5년 이내)
- ∘ (5순위) 직전 사업연도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
- □ (향후 계획) 앞으로도 국세청은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,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기업이 세금문제 걱정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.

참고 1.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주요 내용 및 신청방법

□ 컨설팅 진행절차



□ 컨설팅 주요내용



가업승계 사전·사후요건 진단

지방청 대면상담,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사전 준비사항 및 사후 준수요건 등을 진단하고 보완사항을 안내



상시 자문서비스 제공

가업상속 공제가능여부, 사후관리 위반 추징사유 등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요청에 대하여 4주이내 검토 후 의견 회신



신속한 서면질의 답변

가업승계 관련 법령해석이 필요한 경우 최우선 처리로 불확실성 조기해소

□ 신청대상 및 방법

- (신청대상) ①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 중인 중소기업
 ②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
- (신청기간) '24.7.1. ~ 7.31. (※ 대상자 선정 결과통지는 '24.9.2.까지 개별통지)
- ◦(신청방법) 홈택스* 또는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우편, 방문접수
 - 단, '22~'23년 컨설팅 미선정 기업은 신규 신청 없이도 심사대상에 자동 포함
 - *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: 세금관련 신청/신고 〉 공통분야 〉 일반세무서류 신청 〉 '민 원명 찾기'에 "가업승계 세무컨설팅" 입력 후 조회하기 〉 인터넷 신청

참고 2.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 안내문(홍보용)

①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방법

- 신청대상
-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 중인 중소기업의 대표
- 가업승계이후 사후관리 진행 중인 중소기업의 대표
- 신청기간 및 방법
- 신청기간
 - 2024. 7. 1.(월) ~ 2024. 7. 31.(수)
- 신청방법
 - 홈택스* 또는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* 신청/제출 > 일반세무서류 신청 > 민원명 찾기 '가업승계 세무컨설팅' 조회
- 제출서류
-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
- 컨설팅 대상 선정
- 신청대상자 중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인 수출 중소기업, 사업영위기간이 30년 이상인 장수기 업 등에 대해 우선 선정순위를 부여하며, 서면심사 후 선정결과를 2024. 9. 2.(월)까지 알려 드립니다.

② 가업승계에 세무컨설팅의 주요 내용은?

- 가업승계란?
-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가업상속공제와,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습니다.
 - ① 가업상속공제 :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 까지 상속공제해 주는 제도
 - ②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: 경영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가업을 살아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 10%(20%)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
- 컨설팅 기간
- 대상 선정일로부터 1년간 가업승계 관련 세무컨설팅을 지원합니다.

-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지원 내용
- 컨설팅은 기업현장을 방문하거나 지방청 대면상담 혹은 전화상담 등 기업들의 선택에 따라 받기 편리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.
 - (요건 진단)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개별기업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내용과 사후에 지켜야 할 내용을 진단하고 보완사항을 안내합니다.
 - (상시자문) 가업승계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검 토하여 4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합니다.
 - (신속한 서면답변)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법령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서면질의를 제출하면 최우선으로 처리합니다.

참고 3.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청 방법

○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: 국세증명·사업자등록·세금관련 신청/신고〉 세금관련 신청· 신고 공통분야〉 일반신청/결과조회〉 일반세무서류 신청〉 '민원명 찾기'에 "가업승계 세무 컨설팅" 입력 후 조회하기〉 인터넷 신청

참고 4. 2024년 가업 관련 주요 세법개정 내용

-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 세법이 개정되었고 주 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 - ① 가업상속공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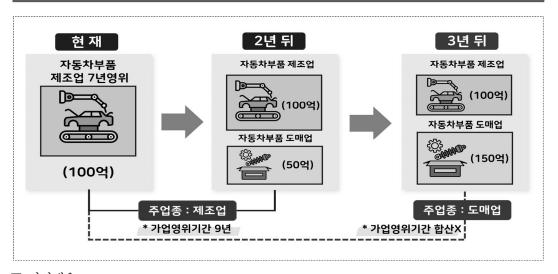
구분	기 존	개 선
사후관리 요건 완화	상속인 가업종사 사후관리 요건 -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	중분류 → 대분류
상속인	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	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은
요건 완화	이사 취임	적용 배제
상속인 가업종사	·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	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은
사후관리 요건 완화	·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내 업종변경	적용 배제

②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

구분	기 존	개 선
저율과세 구간 조정	(세율) 10% - 단, 60억 초과분은 20%	(세율) 10% 단, 120억원 초과분은 20% (60억원→120억원)
연부연납 기간 확대	5년	15년
사후관리 요건 완화	수증자 가업종사 사후관리 요건 -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 변경 허용	중분류 → 대분류

참고 5.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표 사례

■ [사례1] 주업종이 제조업인 법인이 도매업 매출 증가로 주업종이 변경된 경우, 가업 영위기간은 주업종이 변경된 날로부터 새롭게 기산하므로, 기존 제조업을 영위한 기 간은 가업영위기간에 합산되지 아니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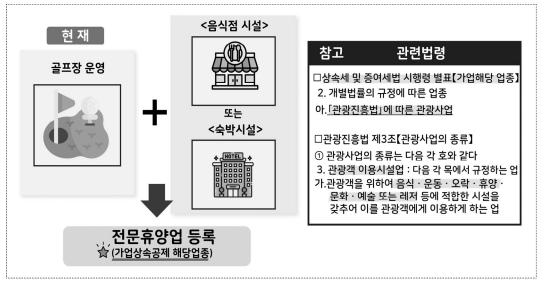


□ 질의내용

-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7년째 영위하던 A법인은 규모 확장을 위해 부품 도매업을 추가할 계획에 있음
- 해당 부품은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거래처 확보도 용이하여 부품도매업 추가시 3년내 도매 업 매출이 제조업 매출액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됨

□ 컨설팅내용

- 2이상의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판단하므로, 업종 별 매출액이 역전되는 경우 주업종 또한 변경되는 것으로 봄
-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대분류(제조업) 내에서 업종이 변경(부품 제조업 → 기계 제조업) 되는 경우는 종전 업종의 가업영위기간을 합산하지만,
- 대분류를 벗어난 업종변경(제조업 → 도매업)의 경우 종전 업종의 가업영위기간은 합산되지 아니하며 주업종 변경일로부터 새롭게 기산함
- 가업상속공제는 주업종을 10년 이상 계속 유지해야만 가능하므로, 향후 매출구조를 고려해 도매업종 추가보다는 별도 법인을 설립할 것을 컨설팅
- [사례2]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 또는 음식점 시설 등을 함께 갖추고 전문휴양시설로 등록한 골프장의 경우,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사업으로 분류되며, 이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



□ 질의내용

- 골프장 법인을 10년째 운영중인 사업자 B는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계획이 있으나, 막대한 조세부담이 우려되어 고민중임
- 골프장운영업은 한국표준분류표상 스포츠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, 이는 가업해당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임

□ 컨설팅내용

- '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사업'은 가업해당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으며, 관광사업에는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·운동·휴양 또는 레저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'관광객이용 시설업'이 포함됨
- '관광객 이용 시설업' 종류에는 숙박 또는 음식점과 골프장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 하게 하는 '전문휴양업'이 대표적 업종임
- 따라서, 숙박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춘 후 관할 지자체에 전문휴양업으로 등록 신청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운영하도록 컨설팅

참고 6. 예상 질의 및 답변

1. 현행 가업승계 세제혜택에는 어떠한 제도가 있는지?

■ 가업상속공제란?

●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.

● 어떤 혜택이 있나요?

가업영위기간	공제한도
10년 이상 20년 미만	300억
20년 이상 30년 미만	400억
30년 이상	600억

-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 가능합니다.
 - 피상속인(사망자)요건
 - ① 최소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하며 대표이사로 재직
 - ② 기업의 지분을 40%(상장사 20%) 이상 보유 * 개인기업, 법인기업 가능
 - 상속인 요건
 - ①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종사
 - ②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
 - ③ 신고기한부터 2년이내 대표 취임

- 다만 승계 이후 5년간은 아래의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.
 - ※ 요건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공제받았던 상속세에 이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.
 - ① 가업용 자산을 40% 이상 처분하면 안됩니다.
 - ②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며 가업을 경영해야 합니다.
 - ③ 상속받은 가업 주식의 지분을 유지해야 합니다.
 - ④ 5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과 총급여액이 기준고용인원(기준총급여액)*의 90%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.
 - * 상속개시일 직전2개 사업연도의 평균

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란?

- 경영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가업영위 법인의 주식을 낮은 세율로 증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.
- 어떠한 혜택이 있나요?
 - 일반증여와 비교하여 공제액이 크고, 세율이 낮습니다.

구 분	증여공제	세 율
일반적인 증여	5천만원	10~50%
증여세 과세특례	10억원	10~20%

○ 특례적용시 증여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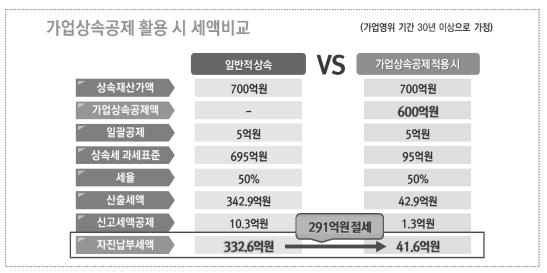
증여세 과세표준	증여세 과세특례 세율	
[과세가액-10억]≤120억	10%	
[과세가액-10억]>120	120억 초과 20%	
(과세가액 한도:600억)	120억 이하 10%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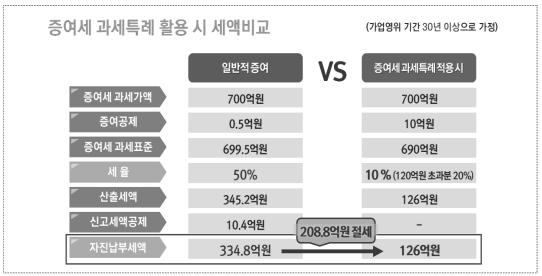
-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특례적용 가능합니다.
- 증여자(부모) 요건
 - ① 최소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
 - ② 기업의 지분을 40%(상장사 20%) 이상 보유
 - * 개인기업은 적용 불가능합니다.
- ㅇ 수증자 요건
- ① 18세 이상 자녀,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
- ②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 취임

- 다만 승계 이후 5년간은 아래의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.
 - ※ 요건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율을 적용한 증여세에 이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.
 - ①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을 유지해야 합니다.
 - ②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며 가업을 경영해야 합니다.

2. 세제혜택을 적용받는 경우 얼마 정도의 절세효과가 있는지?

○ 30년 이상 경영하고 가업재산이 700억 원인 경우 각 제도별 절세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.







3. 금년에도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자가 확대되는지?

- 올해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*을 유지할 예정이며, 대상자 확대보다는 내부역량 제고를 통해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, 관리시스템 구축 등 컨설팅 품질관리에 주력할 계획입니다.
 - * ('22년) 150개 → ('23년) 189개 → ('24년) 190개

4. 가업승계 지원팀에게 모든 세무 문제를 공개해야 하는지?

- 가업승계 요건의 적정성 및 쟁점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만 공개하면 됩니다.
 - 컨설팅은 세무검증이 아닌 가업 적용요건을 갖추기 위해 현재 준비해야 하는 것에 대한 '실 질적인 조언'이 주된 목적으로 컨설팅 과정에서 취득한 세무상 정보는 과세정보로 활용되 지 않습니다.

5. 세무컨설팅을 여러번 받을 수 있는지?

- 많은 유망 중소기업이 세제혜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, 컨설팅 서비스를 기업별 1회로 제한 하고 있습니다.
 - 다만, 사후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전년도 컨설팅 대상기업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'상시 자문'과 '서면질의 최우선 처리'가 1년 더 제공됩니다.

6.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에 제한요건이 있는지?

○ 가업상속공제 등 가업승계 세제혜택에는 업종제한이 있으며, 이에 따라 세무컨설팅 또한 동 일한 기준에 따라 업종별 신청제한을 두고 있습니다.

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[별표]

- <가업 해당 업종> 제조업, 건설업, 도매 및 소매업, 음식점업, 출판업, 연구개발업, 방송업, 광고업, 전기통신업,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,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, 경비 및 경호서비 스업 등
- <가업 제외 업종> 농·임·축산·어업, 주점업, 주차장 운영업, 부동산업, 택배, 금융·보험업, 법무·회계 서비스업, 이·미용업, 입시학원, 스키장, 노래방, 게임장, 무도장, 욕탕, 세탁, 예 식장 등